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6. 7. 10.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6년 7월 4일

다. 상정일자:제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7.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총무과장 문엽승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  
기구의 폐지·분합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고,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대비를 위하  
여 안전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수요  
가 증가하는 부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량의 감소나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병사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서 시민봉사실로 이관하여 호적과 병사자원  
관리의 연계성 도모(안 제5조제5호, 제6조제  
5항제6호)

○재난관리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  
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안전관리종합사무  
추가 신설(안 제6조제5항제6호, 제7호)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  
무관리과에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사무강화  
(안 제7조제3항제8호)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사무를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공부의 연계 관리 도모(안 제7조제  
5항제8호)

○청소과 및 환경과의 중첩적 사무 등  
일부 조정, 통일(안 제8조제6항, 제7항)

○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무를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행정여건의 지  
역특성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  
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

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민방위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  
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가스사  
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가스시설과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과에 가스계, '95. 12.  
29.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재개  
발사업의 업무일부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이양됨에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도  
시개발계가 새로이 확대 신설되는 기구임.

○현재의 기구를 상계 조정하여 신설, 개  
편되는 행정기구로는 건축물관리업무를 지적  
과로 이관하여 토지관련업무와 병행하여 취  
급하도록 하고,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관리계  
를 신설하여 자립도가 낮은 마포구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관리업무를 전문화하  
도록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지역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과에  
수질과 공해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수질관리계와 공해관리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유지  
하도록 하는 등 시민봉사실을 비롯한 11과  
의 계 직계를 개편, 신설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86
----------	----

제출일자:1996. 7. 4.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  
정기구의 폐지·분합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대비를 위  
하여 안전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수  
요가 증가하는 부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업  
무량의 감소나 중복되는 부서는 통·폐합하  
여 지방행정조직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병사에 관한 사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민봉사실로 이관하여 호적과 병사자원 관리의 연계성 도모(안 제5조제5호, 제6조제5항제6호)

○재난관리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안전관리 종합사무 추가 신설(안 제6조제4항제6호, 제7호)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사무 강화(안 제7조제3항제8호)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사무를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이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공부의 연계 관리 도모(안 제7조제5항제8호)

○청소과 및 환경과의 중첩적 사무 등 일부 조정, 통일(안 제8조제6항, 제7항)

○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무를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로 이관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 12. 29. 법률 제5,069) 제15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1995. 12. 28. 대통령령제14,841호)

4. 조례안:별첨

5. 예산조치의 필요성:필요

붙임: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사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7.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8.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 제8조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노 및 정화조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7.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호, 제7조제5항제8호, 제8조제6항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1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에 관한 사무는 시민봉사실이, 시민봉사실의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발급에 관한 사무는 지적과가, 청소과의 분노 및 정화조 등에 관한 사무는 환경과가,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무는 건설관리과가 각각 승계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생략) <u>(신설)</u></p>	<p>제5조(시민봉사실) <u>(현행과 같음)</u>  1.~4.(현행과 같음) 5.병사에 관한 사항</p>
<p>제6조(총무국) ①~④(생략) ⑤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생략) 6. 병사에 관한 사항 <u>(신설)</u> <u>(신설)</u></p>	<p>제6조(총무국) ①~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u>(삭제)</u> 6.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7.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제7조(재무국) ①~②(생략) ③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생략) <u>(신설)</u> ④(생략) ⑤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생략) <u>(신설)</u></p>	<p>제7조(재무국)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세의수입 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p>
<p>제8조(시민국) ①~⑤(생략) ⑥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5.(생략) <u>(신설)</u> <u>(신설)</u>  ⑦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생략) <u>(신설)</u></p>	<p>제8조(시민국) ①~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분뇨 및 정화조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7.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⑦(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지정폐기물관리예 관한 사항</p>
<p>제9조(도시정비국) ①~③(생략) ④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략) 3.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⑤~⑦(생략)</p>	<p>제9조(도시정비국)①~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u>(삭제)</u>  ⑤~⑦(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국) ①(생략) ②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생략) (신설)  6.(생략) ③~⑤(생략)	제10조(건설국)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7.(현행 제6호와 같음) ③~⑤(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6. 7.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1996년 7월 4일
- 다. 상정일자: 제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7. 10.) 상정, 심사, 보류  
제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6. 7. 13.) 재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문엽승

가.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며, 저소득층 재가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장애인 복지업무를 확대코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구분청 정원의 총수 "910명"을 "938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동 정원의 총수 "487명"을 19명 감원하여 "468명"으로 함(안 제2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910명의 구분청 정원을 28명 증원하고 487명의 동사무소 정원을 19명 감원하려는 것임.

○순수 증원되는 인원은 각종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안전지도계에 계장요원을 포함한 4명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산업과에 신설되는 가스계에 계장요원을 포함한 2명, 도심재개발사업 업무일부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신설되는 도시개발계장요원 1명과 노인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도우미요원 1명이 배치되는 등 총 9명이 순수 증원되는 것임.

○나머지 19명의 증원내용은 동사무소업무 중 쓰레기봉투판매 방법을 구청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주차단속업무도 구청에서 전담 또는 주차단속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동 업무량이 감축됨에 따라 19명의 동 인력을 구분청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포구에 들 수 있는 총 정원은 1,411명이나 현재 마포구 총 공무원수는 방법원 135명을 포함하여 구분청 910명, 의회사무국 29명, 보건소 76명, 동 487명 등 총 1,502명이나 방법원은 총 정원에서 제외되므로 마포구의 현재 정원은 1,367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여유 정원은 44명이 됨.

○현재 5국 3실 24과 84계로 설치되어